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곽동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699

발의연월일 : 2025. 8.
발의의원 : 곽동환 의원,
신동윤 의원, 신달호 의원

1. 제안이유

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체 사업자에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,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 경영 안정 및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·3조)

나.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·5조)

다.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외국인 계절근로자”(이하 “계절근로자”라 한다)란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기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농업경영가구,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외국인을 말한다.

2. “고용주”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경영가구,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업경영체 사업자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

된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1.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

2.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

3.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

4.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방안

5.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

6.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

7. 그 밖에 군수가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사업) 군수는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내 입출국에 따른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

2.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등록비 및 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마약검사비

3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

4.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비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5.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교육
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도·점검)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
1. 계절근로자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

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

2.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

3.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

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,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□ 「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(법률)」(2023.2.14. 제정, 2024.2.15. 시행)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,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참고 **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**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운영계획 수립(안 제4조)과 차량 임차료, 외국인등록비 및 마약검사비 등 지원사업(안 제5조),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지도·점검(안 제6조)의 시행에서 비용발생이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1호·제2호)

3. 미첨부 사유

- 안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안 제6조의 지도·점검의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음
- 현재 재정수반요인인 안 제4조, 안 제5조제1호, 제2호, 제5호, 안 제6조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이며, 2025년 본예산 기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비는 17,208천원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
작 성 자			
소 속 및 직 위	달성군의회 의원	성 명 (연 락 처)	곽 동 환 (☎ 2057)